

# 중대시민재해(원료·제조물) 중대재해처벌법



**원료·제조물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에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.**

- ☝ 사망자 1명 이상,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,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



**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- ☝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큼
- 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이행, 이를 위한 인력확보, 예산의 편성·집행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낮음



**원료·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.**

- 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
- ☝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
- ☝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개선·시정명령 등의 이행
- ☝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※ 자세한 사항은 [환경부 누리집](#)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색하세요 